

# 資料

## 耕地整理事業에 대한 提言

嚴泰營\*

### 1. 緒 言

耕地整理事業은 農村近代化 促進法에 根據する 두  
고 區域內 耕地의 區劃形質을 變更하고 用排水路,  
道路 等을 新設 또는 變更하여 土地의 交換分合 等  
으로 農耕地의 基盤을 整備함으로써

① 農機械導入에 의한 農作業의 省力化를 圖謀  
하고

② 耕地條件 特히 물管理의合理化에 의한 水利條件  
을 改善함으로서 食糧의 安定的 生產을 圖謀하며

③ 農作業機械의 效率的 利用을 可能케 rome으로  
農作業의 協業化를 꾀하며

④ 農作業의 省力化에 의하여 發生되는 剩餘勞動  
力を 農作所得 增大에 轉用하는데 寄與하고

⑤ 農耕地의 集團化로 營農의 便宜를 團謀하는  
外에 農村 環境을 改良하는 等의 効果를 얻는 目的  
으로 本事業을 實施하여 왔다.

그러나 現時點에 있어 開發豫定地의 地域의  
開發與件의 不良과 本事業의 社會의 인認識不足,  
主穀의 自給度에 따라 점차 缩少되어 가는 傾向에  
있으며 他事業에 比해 民願이 많은 事業으로서 事業  
推進이 不進함을 難치 못하고 있는 實情이나 農村의  
地域開發과 所得增大를 위해 보다 活性化하고  
efficiency의 으로 施行코자 現在 處理 있는 現況과 檢討  
改善하여야 할 事項을 提示하여 보았다.

이 点에 對해서는 本事業에 從事하는 關聯 公務員  
및 技術實務者는 最優先의 으로 打開方案을 講究  
하여야 할 것이다.

### 2. 現 況

우리나라의 總畠面積은 1983年末 現在 1,323천ha  
中 耕地整理對象 面積은 當初 588천ha로써 44%를  
차지하고 있으나 1979年行政 再調查에 의하면 傾斜

度 1/50 以下의 對象面積은 707천ha로써 53%를 차  
지하며 1/100傾斜地만으로도 651천ha로 49%의 對  
象面積을 차지하고 있다.

이 對象面積中 1984年 5月 30日 現在 本事業의  
實績은 415천ha로서 總畠面積의 31%, 對象面積  
707천ha에 대해서는 58%를 차지하며 水利畠 939천  
ha(83年末 水利畠率 71%)에 대해서는 44%의 實績  
을 올리고 있다.

耕地整理事業의 實績

年度別	實績	備考
1945年外지	38	單位: 천ha
'65~'71	111	
'72~'76	122	
'77~'84.5	144	
計	415	

耕地整理事業은 農閒期의 短期間(前年度 가을 추  
수 후 翌年 移秧前까지)에 工事施行과 復雜한 換地  
業務를 兩個年間에 完了하여야 하는 事業의 特殊性  
을 갖이며 農民의 財產인 土地의 交換分合에 따른  
民願이 가장 多은 事業이다.

最近의 政府施策上 主穀의 自給達成에 따라 向後  
過剩生產을 憂慮 農地基盤造成事業의 擴大 施行을  
止揚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農村 所得增大 開發 및  
流通構造改善 事業 方向으로 投資 轉換하는 段階로  
漸移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現在까지는 平坦地의 開發與件이  
良好한 地域만 耕地整理事業을 施行 完了하였으나  
앞으로는 開發與件이 不良한 準山間部 및 山間部의  
地域만 남게 되어 單位面積當投資事業費가 急增하  
고 있는 實情임으로 事業費 財源中 地方費 및 蒙利  
民負擔額이 增加되어 自然的으로 事業施行이 지연  
되고 있다.

또한 耕地整理事業地區에도 農業機械化가 따르지  
못하여 所期의 目的達成에 차질을 招來하고 있으

\* 農地改良組合聯合會

## 耕地整理事業에 대한 提言

여 국庫支援이 定率制(事業費의 60%)로 되어 있어 있어  
單費가 높은 地域에 對한 國庫負擔 支援費가 크고  
事業單費가 낮은 地域에 對한 集中投資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 3. 政府의 施策

耕地整理事業은 위와 같은 어려운 與件下에서 보  
다 効率의으로 推進코자 檢討하고 있는 施策은 大  
略 다음과 같다.

① 基本 調查를 內實化하여 事業의 優先順位를  
嚴格히 決定하여 投資效果가 큰 地區부터 施行하되  
投資效果가 낮은 地域 即 ha當 事業費가 6,500천원  
以上인 地域과 傾斜度 1/100 以上 地域을 除外토록  
하고 있으며

② 農業機械化率과 耕地整理事業率을 對比 檢討하여  
耕地整理事業 物量을 調整하여 事業效果를 早期 舉  
揚토록 하고 있고

③ 또한 國庫支援도 現行의 定率制에서 定額支援  
制로 變更事業費가 低廉한 地域에 많은 恵澤을 주  
도록 하고 있다.

### 4. 檢討改善事項

耕地整理事業의 效果를 올바르게 認識시키고 不  
進한 事業推進을 効率의으로 推進키 위하여는 다음  
과 같은 檢討改善事項을 열거할 수 있다.

① 殘餘 對象地區가 準山間 및 山間部地域으로 開  
發與件이 점차 不良하여 單位面積當 開發事業費가  
急增하고 있어 이에 對한 計劃設計 施工側面에서 效  
果增大를 為한 單位事業費를 低下시키고 事業의 內  
實化를 기 할 수 있는 方案의 研究檢討가 必要하며

② 耕地整理事業은 제한된 期間에 設計 施工·  
換地業務를 遂行케짐에 事業의 粗雜性 排除를 위한  
適切한 补完對策이 講究되어야 하고

③ 農耕地의 最終 整備事業으로서 時代의 要求에  
따라 田畠並用할 수 있는 土地의 凡用化 方向의  
基盤造成으로 本 耕地整理事業施行方案의 檢討研究  
가 되어야 하며

④ 產業의 高度成長에 따라 都市農村間의 所得隔  
差를 줄이기 위한 適切한 事業은 耕地整理事業임에  
도 不拘하고 本事業이 國家社會에 寄與하는 道路의  
便宜, 用水, 努力 및 生產費節減, 農外所得增大,  
農產物集荷 및 流通構造改善의 寄與와 農村文化生活  
및 環境改善에 至大한 效果가 있으나 이에 對한  
效果를 計量化하여 評價할 수 없는 實情이며 社會

의으로 本事業의 必要性 認識이 不足하여 事業推進  
에 많은 지강과 애로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適切  
한 間接效果 算定方法의 定立이 必要하다.

⑤ 耕地整理事業 理念에 따라 工事完了後 所期의  
目的達成과 效果를 擧揚키 위하여는 集團換地를 施  
行하여야 하나 土地所有者가 從前의 自己 土地의  
地力 상실 先祖로부터 물려받은 固有土地의 애착심  
과 小農의被害에 對한 반발 等 積極的인 反對로  
大部分의 換地는 原地換地를 施行하고 있으나 事業  
理念에 符合된 集團換地施行에 따른 諸問題點을 解  
消하는 方案의 研究檢討가 必要하다.

⑥ 또한 많은 民願을 解消하고 營農의 便宜換地  
業務의 簡素化 및 區劃의 大型화하여 農機械의 能  
率化 圖謀를 위해 事前換地制度를 導入 各道에 示範  
地區를 選定推進하고 있으나 農民이 過度한 工事干  
涉, 無理한 施工要求 設計變更時 地區界 確定에 번  
잡성 等으로 事業推進에 많은 障碍를 遭고 있다.  
이런 問題點은 解消할 수 있는 適切한 方案의 研究  
檢討가 必要하다.

⑦ 事業의 開發與件은 良好하나 地方費中 郡費  
未確保로 事業施行이 지연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郡費負擔 經減의 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 5. 結論

本 事業分野에 從事하는 우리들은 上記 4項에서  
提示한 檢討改善事項을 면밀히 研究 分析하여 適切  
하고 施行可能한 對策을樹立하여 事業遂行에 反映  
하여 事業推進에 萬全을 期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耕地整理事業은 本來의 區劃形質變更 外에 이 事業  
과 關聯되거나 附帶되는 農地造成工事, 改良工事 또는  
農地保全上 必要한 모든工事(客土, 暗渠排水等)  
等의 施行을 一括하여 施行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特히 區域內 用排水施設과 排水改良施設은 勿論  
關聯되는 河川改修 等 附帶事業을 並行 實施하여  
事業效果를 極大化하고 農業機械化와 食糧의 安定的  
供給을 위하여 災害없는 完全한 農土로 綜合開  
發함으로써 農村의 所得增大로 都市民과의 격차를  
줄이고 農村의 生活 및 生產環境의 改善 圖謀를 위해  
本 耕地整理事業을 積極擴大實施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本事業의 積極的인 推進을 위하여는 時代性을 考  
慮한 技術의 研究結果에 따른 效果의 事業施行  
과 事業費의 持續의 支援없이는 事業의 成果를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